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21
----------	--------

제출년월일 : 2025.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신규 인력을 유인하고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정을 일부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지원 및 신청방법, 정산의무, 지원제외(안 제3조~6조)

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안 및 환수조건(안 제7조~제8조)

라. 준용(안 제9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9. 4.~9. 24.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재정지원”을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마을버스 운수종사자</u> ”란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u><신설></u>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u>처우개선비 지급</u>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u>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u>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신 설>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안 제7조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마포구 마을버스 등록차량대수는 106대,, 운수종사자 수는 175명임
- 등록차량대수 대비 적정 운수종사자수는 233명(160대 × 2.2명)이고 적정 인원대비 75% 수준으로 인력이 상시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사업시행 1차년도는 금천구 정책사례(재직: 144명, 예산편성인원: 160명 → 약 11% 증원 산정)를 참고하여 10% 증원한 190명으로 잡고 사업시행 5차년도 까지 적정 인력인 230명을 목표로 연 10명씩 증원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						
	○						
	소계(a)						
세출	○ 처우개선수당	456,000	480,000	504,000	528,000	552,000	2,520,000
	소계(b)	456,000	480,000	504,000	528,000	552,000	2,520,000
□ 총 비용(a-b)		456,000	480,000	504,000	528,000	552,000	2,520,000

○ 산출기준: 200,000원(수당액수)/월×12개월×190명=456,000,000원

(뒷쪽)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구비		456,000	480,000	504,000	528,000	552,000	2,520,000
합계		456,000	480,000	504,000	528,000	552,000	2,520,000

5. 덧붙이는 의견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99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금천구에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비 지원(시구 매칭비 3:7)을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구는 부분동의(시구 매칭비 8:2) 의견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행정과 최민건
연 락 처	02-3153-960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출기준

- 1차년도: 200,000원(수당액수)/월×12개월×190명=456,000,000원
- 2차년도: 200,000원(수당액수)/월×12개월×200명=480,000,000원
- 3차년도: 200,000원(수당액수)/월×12개월×210명=504,000,000원
- 4차년도: 200,000원(수당액수)/월×12개월×220명=528,000,000원
- 5차년도: 200,000원(수당액수)/월×12개월×230명=552,000,000원

(단위 : 천원)

통계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운수사업 보조금	인원수	190명	200명	210명	220명	230명	1,050명
	개월수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60개월
	소요예산	456,000	480,000	504,000	528,000	552,000	2,520,000
계		456,000	480,000	504,000	528,000	552,000	2,520,000